

부담금의 산정기준 (제8조제1항 관련)

1.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분기별 발생량

종류	단위	분기별 발생량
경수로	다발	원자력발전연료로 사용한 후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핵연료로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말한다.
중수로	다발	

2. 부담금

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한다.

부담금 =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× 분기별 발생량

※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= (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- 부담금 적립잔액)
× 1/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

비고

- "경수로"란 일반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.
- "중수로"란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.
- "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"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 (이하 "기준시점"이라 한다) 이후 연도별로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(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법 제9조 각 호의 관리사업을 말한다)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(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)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.
- "부담금 적립잔액"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관리계정 잔액으로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.
- "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"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(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)하여 합산한 총

발생량을 말한다.

6.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, 부담금 적립잔액,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, 실질할인을 및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